##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변경약정서

(파생상품거래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[	] (이하"고객"이라 한다)간	년	월	일에
체결한 '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'의 제4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	손실한도를 즁액하므로, 본 '피	생상품거래	손실한도	변경
약정서'를 다으과 같이 체격합니다. 변경 호 파생상품거래 소식하도는	보 변경약정서의 체격익로부터	유효한니다		

## 제1조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의 변경

[변 경 전]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_	원	
[변 경 후]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_	원	

년 월 일

(고 객) (은행)

주 소: 주 소:

상 호: (인) 상 호: 주식회사 하나은행 (인)



